

청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18가합65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10. 30 선고 2023나5048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18가합6546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7.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토목 공사업,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4.경 청주시 서원구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한 후 2000. 9.경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각종 중기 대여,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2. 22.부터 2015. 8. 10.까지 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G의 형이고, 피고는 2001. 1. 4.부터 현재까지 D의 감사,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H의 배우자이다.

나. D의 채무금액 확인서 작성

D은 2014. 7.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금액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C은 위 확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D 채무금액 확인서

1. 2013년 2월 18일 D과 원고와의 기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의 채권, 채무금 일금

일십억일천삼백사십만 원 정(1,013,400,000원)

2. I 근거당 이전 관련 채권, 채무금 및 (주)으로 입금된 정산금 채권, 채무금 잔액 일금 일십억삼천이백일십육만팔천 원 정(1,032,168,000원)

3. G이 원고 대신 대위 입출금시킨 후 D 대표 H과 원고가 정산한 잔액 일금 이억구천구백만 원(299,000,000원)

** 2014년 7월 8일 현재 정산된 채권, 채무원금 일금 이십삼억사천사백오십육만팔천 원 정(2,344,568,000원)

상기의 3개 항목의 채권, 채무금이 2014년 7월 8일 현재 원고 대출금(군산의 3개 K조합) 및 원고가 (주)으로 입금시킨 후 D 대표 H과 원고 간에 정산완료된 채권, 채무금임을, 또한 상기 3번항 역시 G이 원고 대신 대위 입출금시킨 후 D H과 원고 간에 정산완료된 금액의 잔금임을 정히 확인하며 추후 이 사건 아파트(D 명의 소유물건, C 명의의 소유물건, 개인 L 명의의 소유물건 포함임)의 임대 및 대출 또는 분양시 최우선으로 상환할 것을 이에 각서 확인합니다(약정된 이자금은 별도이며 추후 정산하여야 함).

2014년 7월 8일

채무자 D 공동대표이사 H (날인)

공동대표이사 G (날인)

연대보증인 C 대표이사 M (날인)

연대보증인 L (날인)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2013.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 제1항에는 원고가 2013. 2. 18. D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11. 12.부터 2013. 6. 13.까지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2. 20.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 2017. 12. 20.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확인서 기재만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채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전보람, 판사 서영민

별지